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36호**

2026년 5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6-012호(어선 제207충무호 · 모터보트 한국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07충무호 · 모터보트 한국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정**(****. *. ***)

제***** ** * ** ***** *

귀하는 모터보트 한국호 조종자로 승선 중 2025. 6. 11. 15:0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북동쪽 0.68해리 해상에서 어선 제207충무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207충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한국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한국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적 대신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정박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사전에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